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
표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된다) 1통
7.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 실시권자는”을 “제1항의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로, “공동이용”을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통(경정 이상은 4통)”을 “1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된다) 1통
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9.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부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을 “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2제1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 를 가지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경 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 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 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u>제 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1. 민간인 신원진술서 <u>3통</u> 2. <u>삭 제</u> 3. <u>지문대조표 1통</u>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u>삭 제</u> 6. <u>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만 해당한다) 1통</u> 7. <u>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u>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 ----- ----- ----- <u>제 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필기시 험-----.</u> 1. ----- <u>1통</u> 3. <u>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만 해당된다)</u> 4. (현행과 같음) 6. <u>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 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 해당된다) 1통</u> 7. <u>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 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부</u>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 실시권자는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③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
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
라 한다)의 장이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
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

8.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
여 -----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
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채용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
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
이상은 4통)

3. 삭 제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 설>

6. 지문대조표 1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8조제3
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경력증명서 1통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
부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
용시험등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

<삭 제>

2. ----- 1통

4. (현행과 같음)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
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 해당된다) 1통

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만 해당된다)

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9.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
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부

10.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⑤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시행 7일 전에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하여 -----

-----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3150-2832